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향
의 결 연 월 일	2021. . (제 회)	

대 검 찰 청 의 위 치 와 각 급 검 찰 청 의
명 칭 및 위 치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범계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23호, 2013. 1. 23. 일부개정)되고, 위 남양주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이 2018년 3월 1일에서 2022년 3월 1일로 개정(2017. 12.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15248호)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0. ~ . .)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란 다음에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남 양 주 시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2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4210